녹색당제주도당창당준비위원회규약(개정안)

제1장 총칙

제 1조(목적) 이 규약은 녹색당 제주도당 창당준비위원회(이하 제주녹색당)의 조직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(원칙) ① 제주녹색당은 풀뿌리당원들이 중심이 되는 정당, 지역분권적인 정당, 직접 민주주의와 추첨제등 다양한 민주적 원리들이 살아 숨 쉬는 정당, 내부에서부터 성평등이 실현되는 정당, 청년·소수자 등 기존정치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정당, 문턱이 낮은 정당을 지향한다.

- ② 제주녹색당은 녹색당이 지역에 뿌리를 둔 지역별 당원모임과 생명·생활 의제에 뿌리를 둔 의제별당원모임, 그리고 청년당원들의 연합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- ③ 제주녹색당의 모든 조직과 활동은 2001년 채택된 세계녹색당헌장과 녹색당 강령과 규약, 창립선언문의 정신에 따라야 한다.

제2장 조직

제 3조(당원)

- ① 제주녹색당 당원은 녹색당 강령과 당헌에 동의하여 입당원서를 내고 가입한 사람 중 당원명부가 제주도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
- ② 제주녹색당 당원의 입당과 탈당 및 권리와 의무는 녹색당 당헌과 당규에 따른다.

제 4조(당원총회의 권한)

- ① 당원총회는 제주녹색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며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.
- 1. 제주녹색당의 해산 등 당의 주요 결정사항
- 2. 제주녹색당 규약 개정에 대한 의결
- 3. 10인 이내 선출직 운영위원의 선출、해임
- 4. 2인 이내 감사의 선출ㆍ해임
- 5. 연간 사업 및 예산과 결산의 보고
- 6. 연간 예산결산안의 의결
- 7. 연간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
- 8. 감사보고서 심의 · 의결
- 9.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심의 , 의결
- 10. 기타 중요한 결정

제 5조(당원총회의 소집과 위임) ① 당원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/4분기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이나 재적 당원1/10 이상의 요청으로 열고,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공동운영위원장이 30일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한다.

- 1. 재적 당원의 1/10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
- 2.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
- ② 당원총투표는 당원총회에 준한다
- ③ 당원총회는 온, 오프라인 방식으로 개최하며, 당원은 당원총회 참가를 위임할 수 있다. 위임의 절차와 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

제 6조 (운영위원회) 운영위원회는 아래의 사람들로 구성한다.

- 1. 선출직 운영위원(10인 이내, 남성비율을 50%미만으로 구성한다)
- 2. 사무처장 1인
- 3. 지역별 당원모임 대표 각 1인
- 4. 의제별 당원모임 대표 각 1인(단, 의제별 당원모임은 운영위원회 참가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)
- 5. 청년당원모임 대표 각 1인
- 6. 정책위원장
- 7. 조직위원장

제 7조 (공동운영위원장)

- ① 공동운영위원장은 공동으로 제주 녹색당을 대표한다.
- ② 공동운영위원장은 총회, 운영위원회의 소집권자 및 의장이 된다.
- ③ 공동운영위원장은 2인 이내로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, 남성비율을 50%이하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④ 공동운영위원장의 궐위 시 운영위원회의 호선을 통해 권한대행을 선출할 수 있다. 단, 공동운영위원장 권한대행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제 8조 (운영위원회 심의 · 의결사항)

-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, 의결한다.
- 1. 당원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의 시행에 관한 사항
- 2. 이 규약의 세부 시행과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
- 3. 공동운영위원장, 사무처장의 선출
- 4.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인준과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
- 5. 전국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의 심의 및 전국위원회 의결 사항의 집행
- 6. 의제모임과 지역모임의 승인
- 7. 당원소모임 지원에 대한 의결
- 8. 당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

9. 기타 창당 준비에 필요한 사항

제 9조 (운영위원의 의무)

① 운영위원은 조직위원회가 정한 운영위원 필수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.

제 10조 (운영위원회의 운영)

- ① 정기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한다.
- ② 공동운영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고, 운영위원 1/3이상 요구 시 10일 이내에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.
- ③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다.
- ④ 운영위원회 개최 시는 육아활동 지원을 해야 한다.
- ⑤ 운영위원회는 총회 준비를 위해 총회준비위원회로 전환할 수 있다.

제 11조 (운영위원회의 참관)

제주녹색당 당원은 운영위원회를 참관할 수 있다. 이 경우 참관인은 운영위원회에서 발언권을 가지나 의결권은 없다.

제 12조(지역별 당원모임)

- ① 지역별 당원모임은 3인 이상의 당원이 참여하여 제주도의 동, 서, 남, 북 네 개의 지역 별로 구성하고 최소 2달에 1번 온-오프라인 정기모임을 가질 경우 모임대표가 당연직 운영 위원으로 참여한다.
- ② 지역별 당원모임은 온-오프라인을 통해 당원과의 소통 및 당원 참여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.
- ③ 제주녹색당은 지역별 당원모임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 13조(당원소모임)

- ① 당원들은 녹색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당원소모임을 만들 수 있다.
- ② 당원소모임은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되, 운영위원회의 추후 승인을 받는다.
- ③ 제주녹색당은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가능한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고, 모임에 필요한 전문가를 연결할 수 있다.
- ④ 소모임이 특별한 사유 없이 4개월 이상 모임이 운영되지 않을 시에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.

제 14조(의제별 당원모임)

① 당원들은 녹색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3인 이상의 당원이 참여하여 관심있는 의제별로 의제별 당원모임을 만들 수 있다. 최소 2달에 1번 정기모임을 가질 경우 모임대표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.

- ② 의제별 당원모임은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되, 운영위원회의 추후 승인을 받는다.
- ③ 제주녹색당은 의제별 당원모임에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고, 의제별 토론이나 정책 생산에 필요한 전문가를 연결할 수 있다.
- ④ 의제모임이 특별한 사유 없이 4개월 이상 모임이 운영되지 않을 시에 모임이 해산한 것으로 본다.

제 15조 (제주청년녹색당)

- ① 청년 당원들은 녹색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3인 이상의 당원이 참여하여 청년당원모임을 만들 수 있다. 제주청년녹색당 대표는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.
- ② 제주청년녹색당은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되, 운영위원회의 추후 승인을 받는다.
- ③ 제주녹색당은 제주청년녹색당에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 16조(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) 제주녹색당은 정책위원회, 선거관리위원회, 조직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둔다. 또한 사업별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 각 위원회의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다.
- ① 정책위원회 : 제주녹색당은 녹색가치를 실현하고 연구하기 위해 정책위원회를 둔다.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.
- ② 선거관리위원회 : 제주녹색당은 선출직 당직자의 선출과정을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. 구성과 운영 및 선거 관련 사항은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.
- ③ 조직위원회 : 제주녹색당은 당원교육의 내용을 구성 및 당원 활동을 조직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를 둔다.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.

제 17조(감사)

- 1. 감사는 제주 외 지역의 사람으로 한다.
- 2. 감사는 연 1회 이상 제주녹색당의 업무집행 상황, 재산상태,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 18조(사무처) ① 당원총회,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사무처를 둘 수 있다.
- ② 사무처의 직제와 운영 및 업무에 관한 내용은 사무처내규에 따른다.
- ③ 운영위원장은 사무처장의 궐위 시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사무처장 권한대행을 임명한다. 권한대행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제3장 소환

제 19조 (소환에 관한 규정)

- ① 제주녹색당 당직자나 운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소환할 수 있다.
- 1. 당직자 또는 운영위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- 2. 명백하게 당에 해를 끼친 경우
- ② 당직자 또는 운영위원 소환의 발의는 제주녹색당 당권자 중 10분의 1의 서명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함으로서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라 당직자나 운영위원을 소환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당직자나 운영위원에게 소환 사실을 알리고 당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- ④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소환 의결은 해당 당직자 또는 운영위원에게 효력이 없다.
- ⑤ 제주녹색당은 소환 발의가 적법하다고 확인되는 즉시 소환인 청구대표자 및 해당 당직 자 또는 운영위원에게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- ⑥ 제주녹색당은 소화 통지 후 20일 내에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한다.
- ⑦ 소환여부의 결정은 총회에 참여한 선거권 있는 당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.
- ⑧ 소환대상자는 운영위원회가 총회를 공고한 때부터 그 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.
- ⑨ 소환이 가결되면 그 다음날부터 당직자나 운영위원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.

제4장 재정

제 20조(수입) 제주녹색당의 재정은 당비수입과 기탁금 및 그 외 수입으로 이루어진다.

제 21조(재정 지출)

- ① 당원이 내는 당비는 전국녹색당과 제주녹색당 간에 배분 비율은 당규에 따른다.
- ② 당원모임의 사업비 지원에 대한 세부내용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제 22조(회계관리)

- ① 사무처장은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개하여야 한다.
- ② 사업비를 지원받은 당원모임은 운영위원회에 회계를 보고하여야 한다.

제5장 보칙

제23조(의결정족수) 모든 의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 단 재적인원은 소정의 양식을 통해 위임받을 수 있다.

제24조(세부규정) 이 규약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할

수 있다.

제 25조(임기에 관한 규정) 공동운영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사무처장, 선출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

제 26조(녹색당 당헌과의 관계) 제주녹색당 규약과 녹색당 당헌의 내용이 다를 경우 녹색당 당헌이 우선한다.

제 27조(준용)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당법 및 정당 사무관리 규칙 등에 따른다.

* <제주녹색당 정책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>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제주녹색당 규약 제16조 제1항에 따라 정책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정책위원장의 추천과 승인) ① 정책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승인한다.

- ② 정책위원장의 임기는 운영위원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.
- ③ 공동운영위원장은 제1 항의 추천 이전에 정책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운영위원회에 전달할 수 있다.

제 3 조 (정책위원회의 구성) ① 정책위원은 정책위원장이 임명하되, 실제로 정책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.

② 정책위원의 임기는 정책위원을 임명한 정책위원장의 임기종료때까지로 한다.

제 4 조 (정책자문위원의 위촉) 정책위원장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정책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.

부칙

제 1 조 (효력) 이 규정은 총회를 통과한 날부터 효력이 있다.

- ① 1차 개정 2016년 5월 22일
- ② 2차 개정 2017년 2월 18일
- ③ 3차 개정 2019년 3월 23일
- ④ 4차 개정 2021년 3월 6일